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18호    2018. 5. 1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0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2
- 삼척시 고시 제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82호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389호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3
- 삼척시 공고 제395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60호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증산1지구, 교가1지구, 하거노1지구)의 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삼척시장**

**1. 고시내용**

- 가.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남부지사  
 나. 사업지구 명칭 : 증산1지구, 교가1지구, 하거노1지구  
 다.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증산1지구 : 삼척시 증산동 1번지 일원 (153필 / 132천m<sup>2</sup>)
  - 교가1지구 :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563번지 일원 (71필 / 21천m<sup>2</sup>)
  - 하거노1지구 :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6번지 일원 (276필/148천m<sup>2</sup>)
- 라. 대행업무 :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2. 고시일자 및 방법**

- 가. 고시일자 : 2018. 05. 11.  
 나. 고시방법 : 시보

**3. 참고사항**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부서(☎033-57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5. 1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174 외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5.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184-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174	20180511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210-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626-78	20180511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84	강원도 삼척시 회강길 301 (마평동)	20180511	건물신축	20090626	오십천내지형지물명칭활용(도경동,오사동,마평동연결)	
4		이	하	여	백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184-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174	20180511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변경(산패)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포면 내미포리 210-2	강원도 삼척시 미포면 동안로 626-78	20180511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마병동 84	강원도 삼척시 화강길 301 (마병동)	20180511	건물신축	20090626	오십천내지형지물면적활용(도경동, 오사동, 마병동연결)	

삼척시 공고 제2018-382호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9일  
삼척시장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오십천 물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및 이용료 징수, 위탁관리, 안전점검 등 조치, 이용의 제한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관리(안 제5조)
- 나. 위탁의 취소(안 제7조)
- 다. 예산의 지원(안 제8조)
- 라. 운영기간 및 휴업일(안 제10조)
- 마. 운영시간 및 이용료(안 제11조)
- 바.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안 12조)
- 사. 이용의 제한(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참조:공원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제정(안)	수정 의견서		비 고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화, 팩스

- E-mail : gyu@korea.kr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공원녹지과

- 전 화 : 033 - 570 - 4065

- 팩 스 : 033 - 570 - 40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공원녹지과(☎ 033-570-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오십천 물놀이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시설”이란 수변을 포함한 부잔교, 계류장,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관리시설,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수상레저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수상레저시설의 명칭은 “오십천 물놀이 시설”로 하고, 위치는 삼척시 정상동 44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수상레저시설의 관리·운영)** ① 수상레저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수상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상레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상레저시설 및 수상레저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시장은 관리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④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탁계약 체결 시 시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수상레저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수상레저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장비·비품 등을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점검 등 조치)** ①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기간 및 휴업일)**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위탁 또는 계절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2. 추석 오전(13:00시부터 개장)
3. 수상레저시설의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폭우, 바람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9.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삼척시민, 삼척시와 자매결연 도시 주민
2.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3조(이용료의 징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매표(발권)시스템에 의해 현장 판매하여 징수하며,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기후변화, 천재지변, 수상레저기구의 고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레저기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관리자의 질서유지에 따르지 않거나 자연환경 및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제16조(변상조치)** 수상레저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처리)** ① 수상레저업을 통한 수입은 삼척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판매 수입금을 수입징수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상레저기구 이용료(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이용기구	이용시간	인수	이용료	비고
오리보트	40분	2~3인승	4,000	
오리보트	40분	4인승	6,000	
오리보트	40분	2인승	3,000	
수상자전거	40분	2인승	3,000	
수상자전거	40분	2~3인승	4,000	
페달보트	40분	4인승	6,000	
투명페달보트	40분	4인승	4,000	
투명카누	40분	2인승	2,000	
카누	40분	2~3인승	2,000	공기 주입식
카누	40분	2인승	2,000	공기 주입식

※ 이용료는 1대당 가격

삼척시 공고 제2018-38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8.05.08. ~ 2018.05.22 (15일간)
- 3. 말소일자 : 2018.05.08.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용○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70-2 목조 합석 (1층:71.12㎡ 정미소), 블록조 스테이트(1층17.39㎡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08.

삼척시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8-395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삼척시장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개관시간 조정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2018. 7. 1.부터 시행
- 나.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 등 자문을 위한 비상임 위원의 위촉이 필요함.
- 다. 더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입장료 하향 조정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 가. 개관시간 조정(안 제7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 하절기(4. 1. ~ 10. 31.) : 09:00 ~ 21:00 - 동절기(11. 1. ~ 다음해 3. 31.) : 09:00 ~ 18:00	- 절기구분 없이 09:00 ~ 18:00



나. 비상임위원의 위촉(안 제7조의2 신설)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입장료 하향 조정(별표 제1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우 25914)
- 연락처 :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시설운영팀 (033-570-4207)
- F A X : 033- 570-3187

###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시장은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의 한도

○ 도계유리나라			
대 상	성 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5,000원	4,000원	3,0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500원
○ 피노키오나라			
대 상	성 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2,000원	1,000원	1,000원
단체	1,000원	500원	500원
○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통합권)			
대 상	성 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6,000원	4,000원	3,000원
단체	3,500원	2,000원	1,500원
<p>※ 대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인 : 20세 이상, 경로대상자 65세 이상</li> <li>-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li> <li>- 군 인 :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li> <li>-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li> <li>-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li> </ul> <p>※ 입장료 면제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li> <li>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li> <li>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할 수 있다.</li> <li>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li> <li>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li> <li>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li> </ol> <p>※ 입장료 감면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장료의 50%감면(신분증 및 감면 증빙 서류 제시, 중복 감면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li> <li>○ 65세 이상 노인</li> <li>○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ul> </li> </ol>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관 및 휴관) ①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개관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시장은 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표 1] 입장료의 한도(제10조 관련)	[별표 1] 입장료의 한도(제10조 관련)
○ 도계유리나라	○ 도계유리나라
대 상 성 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대 상 성 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8,000 6,000 4,000	개인 5,000원 4,000원 3,000원
단체 5,000 4,000 3,000	단체 3,000원 2,000원 1,500원
○ 피노키오나라	○ 피노키오나라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3,000	2,000	1,000
단체	2,000	1,000	500
○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통합권)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10,000	7,000	5,000
단체	6,000	5,000	3,000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2,000원	1,000원	1,000원
단체	1,000원	500원	500원
○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통합권)			
대상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6,000원	4,000원	3,000원
단체	3,500원	2,000원	1,500원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규칙 제명 :
-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